

# 소 장

원 고 ○○주식회사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우편번호) 대표이사 ○○○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◆◆◆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 전화・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손해배상(기)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2. 9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

- 1. 원고회사는 각종 식류품 및 세제류의 유통업체이고, 피고 ◇◇◇는 2000. 1. 15.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2002. 3. 1. 다른 창고업무종 사자들을 감독하며 물품의 출납과 재고관리 및 장부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인 창고장에 취임하여 2002. 9. 30.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피고 ◈◈◈는 피고 ◇◇◇의 원고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을 한 사람입니다.
- 2. 그런데 2002. 9. 30. 피고 ◇◇◇〉가 원고회사를 퇴직하여 창고장직을 그만둔 뒤피고 ◇◇◇〉가 창고장의 직무를 인수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에 그 후 새로이 입고된 총물량을 더한 다음 거기에서 피고 ◇◇◇의 창고장 직무수행기간 중의 총출고량을 공제한 수량과 후임자에게 인계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를 피고 ◇◇◇의 책임아래 작성된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따져 본 결과 금 35,000,000원 상당의 물품이 부족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.
- 3. 피고 ◇◇◇◇의 원고회사 창고장으로서의 책무는 입・출고시 물품의 수량 및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지휘・감독하여 보관 중인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고, 이에 부수하여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 등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◇◇◇◇는 원고회사의 창고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할 것이며, 피고 ◈◆◆는 피고 ◇◇◇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손해를 전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4. 그렇다면 원고회사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족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 이후로서 손해발생을 확인한 2002. 9. 30.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

1. 갑 제2호증의 1 내지 30

1. 갑 제3호증

각 일일재고현황표

각 출・입고의뢰서

인수인계서

## 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주식회사

대표이사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			CON A CHOTE	<b>크로구조공</b> 단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) ※ 아래(2)참조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 불복절차 및 기 간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•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•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	
지연손해금	<ul> <li>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(심판을 포함)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(현재는 연 12%임)에 의하고(다만,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, ②채무자가 그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</li> <li>・그런데 위 법조항의 「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」는 「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가 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」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,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, 한편 「그 상당한 범위」는 「채무자가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」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</li></ul>	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라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소멸시효

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고(민법 제162조 제1항)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함(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다54269 판결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